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8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김승수・서지영・최은석

김상훈 · 엄태영 · 조승환

조배숙 · 김선교 · 박충권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 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제3항 중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 2.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
-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석승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00條(補闕選擧) ① ・ ② (생	第200條(補闕選擧)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의석을</u>	③ <u>다음</u>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u>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u> 때	
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	
정하지 아니한다.	
<u><신 설></u>	1.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이 해산된 때
<u><신 설></u>	2.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u> 궐원이 생긴 때</u>
<u><신 설></u>	3.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
	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
	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
	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
	어 궐원이 생긴 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